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1	2001년도시정 업무계획청취 결의안	☐ 제안이유 ○ 2001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내실있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시정업무 계획청취 결의안을 발의 함 ☐ 주요내용 ○ 기 간 : 2001. 2. 10 ~ 2. 14(4일간) ○ 장 소 : 각 상임위원회실 ○ 인사(간부소개) 및 총괄설명 • 본 청 : 국 장 • 사 업 소 : 사업소장(4급) • 구 청 : 구 청 장 ○ 업무계획 세부설명 • 본 청 : 담당관, 과장 • 구 청 : 과장 • 사업소: 사업소장(과장)	-	본회의
2	성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및운영 조례안	☐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자문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 사항을 수렴하여 갈등의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의회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3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 주요골자 가. 기 능 (안 제2조)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조사,자료의 수집,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2) 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3) 주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화·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 나. 구성 및 위원 위·해촉(안 제3조,제4조) (1) 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전문 지식을 갖춘 인사 10명 이내로 구성 (2)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3) 의장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자문위원 위촉 다. 임기 및 회의(안 제5조, 제7조) (1)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2)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의장이 소집 라. 실비 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가능 (안 제9조) □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규칙으로 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외국의 정부 차원의 공식행사 초청, 3개 국가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의 체결·교류행사를 위한 출장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로 함 (안 제2조) 나.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1) 성남시 의회의원, 대학교수, 시민, 사 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2) 공무국외여행의 여행기간, 여행국, 경비 등의 적합성 심사 다. 여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 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관 위원회 본회의
4	탄천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제안이유 ○ 탄천 상류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증으로 생활·오 폐수 문제가 대두되어 탄천의 오염 및 하천 기능 상실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하여 탄천 주변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바, ○ 시의회에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탄천의 수질과 주변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2명씩 선정하여 총 6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함	-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위 회
5	성남시시세감면 조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2001년도부터 적용될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에서 단서조항을 간결, 명료화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2조, 제3조) · 임대주택 사업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세 감면조례상 임대주택자에 대한 감면 규모와 일치시킴으로서 형평성 도모(안 제10조) · 농촌주택개량, 미분양주택,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및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유통사업지원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감면기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에서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으로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 도시계획법에 의거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안 제15조)	세 정 과	행정경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인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15년간 전액면제 확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유치 활성화 도모(안 제22조)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 면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23조) ·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감면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24조)		
6	성남시시세조례 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안 제3조 및 제30조 내지 제39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에 따라 경감(안 제28조의2)	세 정 과	행정경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7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연수에 관한조례안	·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세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인상함(안 제29조) □ 제안이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외국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의 정부에 파견 연수토록 함으로써 선진행정 습득, 국제정보 수집, 외국어소양 함양을 통하여 국제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지방 행정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 6급이하 근면성실한 공무원으로서 국가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선발하며 연수기간은 1년으로 함(안 제2조, 3조, 5조) · 우수공무원의 선발의 적정을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외부전문가, 시의원 등 7인 이내로 해외 파견연수공무원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안 제4조) · 해외파견연수 관련경비는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준용함(안 제7조) · 해외파견연수 수료공무원을 관련부서에 5년간 배치함(안 제8조)	국제통상과	행정경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8	성남시근로자 종합복지관운영 관리사무의민간 위탁동의안	□ 제안이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방법 · 수탁사업자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선정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노동부 시행)을 준용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약 체결로 함 ○ 협약서 내용 ○ 위·수탁 사무 · 시설규모(지하 2층, 지상 4층) - 대지 : 7,402㎡ , 건물 연면적 : 4,347㎡ · 위탁내용 : 복지관 시설관리 및 업무수행 ○ 위·수탁 기간 : 2년(단, 연장시 재협약체결) ○ 운영비 (안 제11조)	지역경제과	행정경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위 회
9	성남시공공공지 의관리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공공공지의관리에조례중 관련법 규정을 변경 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공공 공지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공지의 목적과 관련된 법규정을 변경(안 제1조)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공공 공지의 정의를 일부 수정(안 제2조)	환경녹지과	사회복지
10	성남시도시공원 조례중개정조례 안	□ 제안이유 성남시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의 확대로 여성 위원이 참여토록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성남시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를 13인에서 15인 으로 확대함(안 제21조 제1항) · 당연직 위원중 업무의 중첩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위원에서 제외함 (안 제21조제3항)	공원관리과	사회복지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건명	부의안건요약	소관부서	소관위원회
12	성남시폐기물관리 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조례문구에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도출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의 계획에 따라 토지·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 제3항) ·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제정되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를 정비(안 제14조)	청 소 과	사회복지
1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 관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제안이유 · 쓰레기 감량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료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희망 신청세대에 비하여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시설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추가시설설치에 따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 위치 : 태평동 7004번지(폐기물종합처리장 內)	청 소 과	사회복지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11	성남시 생활폐기물 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2000. 4. 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및 '99. 6월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신설함 ☐ 주요골자 · 가정 쓰레기중 폐유리, 폐도자기류, 폐형광, 폐건전지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6호, 안 제6조) · 쓰레기봉투 제작시 소각·매립에 적합한 재료인 탄산칼슘 함유, 생분해성 수지를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불연성봉투의 재질은 마대용 폴리에틸렌 연시사, 폴리프로필렌 연시사로 제작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쓰레기봉투 전면에 소각, 매립에 적합한 재료가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명시와 쓰레기봉투 납품시 쓰레기종량제봉투단체표준규격등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4항) ·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8조제5호, 제6호)	청 소 과	사회복지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부의안전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14	성남도시계획 시설(광장)변경 결정의견청취안	· 면적 : 824㎡(250평), 폐 분뇨1차처리장 개축 - 건물 672㎡(203평), 사무실 54㎡(17평), 투입차량 대기공간98㎡(30평) · 시설내역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1개소 - 처리용량 : 50톤/일 - 처리방식 : 건식사료화 ○ 위탁기간 : 지방재정법 및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함 ○ 위탁범위 · 대상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자원화 미참여 세대 85,000세대 · 내용 : 음식물쓰레기 건식사료화 처리 운영 □ 제안이유 당초 분당택지개발 당시 교통광장으로 결정하여 백궁정자지구내 쇼핑단지와 백현유원지를 입체적으로 연결코자 하였으나 쇼핑단지가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광장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교통광장 일부부지를 변경(폐지)하여 분당구 일원에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변전소부지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광장 결정(변경)조서 - 위치 : 정자동 5-1번지 - 면적 : 16,500.2㎡ → 11,845.2㎡(감 4,655㎡)	도 시 과	도시건설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부의안건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15	2001년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계획안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구역명 :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정자동 5-1번지 - 용 도 : 변전소 -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80%이하, 높이 18m이하(지하1층, 지상3층) □ 제안이유 · 첨단산업육성기반인 유망벤처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등을 유치할수 있는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 야탑동에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공간을 확보 하기 위한 문화시설 매각하여 용도에 맞는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이 질높은 문화 생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정자동에 분당벤처타운 건립을 위하여 한국토지 개발공사로부터 성남시에서 매입한 토지를 매각 하여 민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를 일반시민에게 매각하여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공공·공공용부지 확보등 효율성이 높은 재산을 대체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매입) 일반회계 49,074,573천원 - 토지 : 9필지 19,135.6㎡ 22,374,573천원 - 건물 : 2동 94,885.78㎡ 26,700,000천원 ○ 처분(매각) 일반회계 31,555,547천원 - 토지 : 9필지 22,280.4㎡ 31,555,547천원	회 계 과	행정경제